

한국균학회 기금위원회 규정

제1조(설치)

본회 정관 제27조 제 1항에 따라 기금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는 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둔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정관 제27조 제 1항에 따라 원활한 학술 활동과 친목을 도모 하고 필요한 특별사업의 수행과 학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및 위원 선출)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학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1명을 둘 수 있다.
- ④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집행한다.

1. 기금의 조성확장과 확장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임기)

위원장, 위원,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및 의결)

1. 본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2. 기금의 지출 및 운영은 이사회에 결정에 따르며 기금의 조성 및 증식에 관한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에 따라 처리한다.
3.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 결정에 따른다.

제7조(보고)

본 위원회의 사업내용은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생된 수익금은 지체 없이 금융 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통장관리)

기금 예치통장 및 유가증권의 명의는 “한국균학회”로 하고 통장 및 유가증권은 재무간사가 보관하고 인감은 회장이 보관한다.

제9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도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